

KBI ISSUE PAPER

이슈 페이퍼

05-05(9)

2005 8 17

(KBI)

● 목 차

- I. 검토 배경 및 맥락
- II. 방송통신행정조직의 변화와 융합 제도정비
- III. 방송통신 융합 관련 주요 이슈
- IV.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 일본은 방송통신융합 규제 및 법제 정비 면에서 선형국이며 우리와 지리적 인접국이자 방송통신융합산업에서 경합대상임. 마침 국내에서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살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임.
- 법제는 달라도 총무성의 국(局)차원에서 단일 방송 통신 행정조직인 관계로 방송통신융합현상과 이의 제도화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 가능.
 - 일본은 IT인프라 등이 한국보다 뒤쳐졌음에도 오랫동안 정부부처의 방송통신 단일조직을 유지해온 관계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음. IPTV, 위성DMB, 지상파DAB 등과 같은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매체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할 수 있었음.
- 50여년 넘게 단일 방송통신 행정조직 형태를 유지해온 일본이지만, 법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융합현상의 진전정도에 따라 이의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임.
 - 방송통신 중간 영역적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1997년, 2001년),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한 별정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제 정비(2001년).
- 선 규제기관 단일화, 후 단계적 제도 정비라는 일본형 모델은 우리의 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후 법제정비 ‘수순’과도 유사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방송통신 행정조직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한국과 총무성 내국(內局)¹⁾으로 단일화된 일본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중앙행정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에 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우정성을 해체하고 신설된 총무성의 내국으로 방송통신행정을 이관 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의 방송통신행정 3국도 현재 2국으로 축소된 상황.
- 일본의 방송통신행정은 정부부처주도형 조직으로 이의 이점은 국가전략산업이자 성장유망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쉽 발휘가 가능하다는 점임.
- 일본은 2001년부터의 e-Japan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IT선진국에 올라섰으며 2010년까지는 일본국민이 모두 고속 또는 초고속을 이용 가능한 ICT 사회²⁾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방송 통신 분야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적인 대책, 제도개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한 연구 개발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단일조직으로 방송통신을 관할하고 있음.
- 방송통신융합의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합의제 형태인 위원회 조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타 부처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움.
- 일본정부는 독립행정위원회가 의원내각제의 독임제 시스템 하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총무대신의 독단을 일정부문 견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기관(전파감리심의회, 정보통신심의회)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1952년 전파감리위원회 폐지 이후 정부부처형 방송통신 행정조직이 일관된 기초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일부에서 총무성의 외국(外局)에 통신방송위원회를 두는 논의가 제기되었음. 그러나 방송행정의 공정중립과 행정의 일관성의 제도적 보장 차원에서 정부부처형태를 유지.

- 방송통신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융합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행정위원회 형태보다 정책과 규제, 진흥을 아우르는 일본의 정부부처형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4년 6월 콘텐츠 진흥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조직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관련부처 등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 진흥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지금까지 콘텐츠 진흥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대만의 콘텐츠 진흥정책 등에 자극받아 정책드라이브를 걸려는 시도임.
-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방송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1) 일본의 방송통신행정조직은 2001년 1월에 우정성자체가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의 3국에서 신설된 총무성내 2국으로 사실상 부서도 축소됨.
- 2) ICT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2010년까지 자국민의 100%가 고속 또는 초고속이 이용 가능한 사회, 국민의 80%가 ICT사회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사회, 국민의 80%가 ICT에 안심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

1.

1)

- 1 대 다(多)인 방송과 1 대 1인 통신은 추구하는 가치나 규제 내용이 다르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신규 서비스 등의 등장으로 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통신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송,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과 비밀을 원칙으로 하는 통신,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에 무게를 두는 통신과 엄격한 진입, 소유, 내용규제 등을 실시하는 방송은 서로 상이한 정책과 규제틀 속에서 존재해왔음.
-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과 광대역 네트워크의 보급, 인터넷 및 휴대폰 이용자의 증가 등으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2)

- 이원화된 법제와 행정기구로 인해 방송통신융합영역의 중복대처 또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캐스팅은 방송위원회가, 나머지는 정보통신부가 관할하고 있는 모호한 형태임.
- 지상파 방송사 등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웹 캐스팅과 VOD서비스를 제공.
- 케이블 TV는 DMC 등을 통해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VoIP 등을 동일 패키지로 제공할 것임.
- VOD, 데이터 방송, DMB도입 등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 통신 논쟁을 거듭하고 있음.
- 광대역 통신망(BcN)을 이용한 IPTV의 도입은 서비스개시 전부터 두 기관 간에 방송통신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향후 와이브로 서비스(Wireless-Broadband), 홈 네트워크 등이 본격화될 경우 또 다시 이의 재연 가능성이 높음.

-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웹캐스팅, VOD, 데이터 방송, DMB 등의 매체 및 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상당기간에 걸쳐 소모적인 영역싸움을 지속해왔음. 방송통신규제기구 통합과 법제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담당기관 간에 영역다툼 및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본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
- 방송통신융합현상에 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융합 또한 지체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송통신융합논의를 조기에 매듭짓고 이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소모적 영역 논쟁만을 되풀이 하며 선진대열에서 갈수록 낙오되고 있는 실정임.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배경으로 그 동안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서 선도적 지위를 누려왔지만, 규제기구 및 법제의 미비로 이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2.

1)

-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각자 새로운 정책과 규제모델을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등은 각국의 실정에 걸맞게 규제기구 및 법제 정비를 거의 마쳤음.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타스 사회(Ubiquitous Society)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융합 관련 규제와 법체계, 그리고 방송통신융합현상도 비슷함.
- 일본은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관 및 법제 정비 면에서 선형국이며 우리와 지리적 인접국이자 방송통신융합산업에서 경합국가임. 마침 국내에서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살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임.

2)

- 50여년 이상 독임제(獨任制) 방송통신행정기구를 유지해온 배경과 흐름은 무엇인가?
- 국(局) 차원에서 방송통신 행정조직은 단일화되어 있지만, 방송통신 법제는 상이하다. 그렇다면 방송통신 융합현상의 진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수준은?
- 현재 총무성 주도로 방송통신융합 행정과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그밖의 논의와 이슈는 무엇인가?
- 일본형 방송통신융합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1.

- 점령통치기인 1945년 종전이후부터 1950년 6월까지 방송통신행정은 일본 정부부처인 전기통신성의 외국(外局)인 전파청에서 담당해왔으나 그 이후 식민지 국책방송의 뼈아픈 반성 위에 방송의 민주화를 모태로 1950년 6월에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한 독립행정위원회인 ‘전파감리위원회’가 총리부의 외국(外局)에 설치됨.
- 그러나 점령통치가 종식된 이후 초대 요시다(吉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1952년 7월에 전파감리위원회를 해체했음.

○ “행정기구민주화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원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사회경제의 실제(實際)가 반드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조직적으로는 방대화되고 능동적으로 행정목적의 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책임의 명확성을 결여해 능률적인 사무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한다.”(片岡俊夫, 2001, 223쪽)

- 그 이후 줄곧 정부부처인 우정성³⁾이 방송정책 및 규제를 담당해왔음.
 - 독임제 행정관청이 방송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방송행정의 공정 중립과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片岡俊夫, 2001, 224쪽)임.
- 1990년대 후반 이후 중앙부처조직 개편⁴⁾을 둘러싸고 별도의 독립행정위원 회인 ‘통신방송위원회’ 설립논의가 제기되었음.
 - 통신방송위원회는 총무성의 외국(外局)으로 전과감리 등을 포함한 통신/ 방송행정을 담당한다(1997년 9월의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
 - 그러나 통신방송위원회 설립구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철회되었음.

- 독립행정위원회의 설치는 의원 내각제 하에서 대신을 장으로 하는 독임제 기관이 기본인 일본의 정치제도상 적합하지 않음.
- 방송 통신 분야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적인 대책, 제도개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한 연구 개발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만큼, 독립성을 지닌 합의제 행정위원회로는 적절하지 않음.

- 중앙부처조직 개편에 따라 2001년 1월부터는 우정성이 해체되고 신설된 총무성의 내국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수행.
 - 방송통신 관련 부서가 이전의 3국에서 2국으로 축소됨(아래 표 참조).
 - ※ 총무성의 모태는 우정성과 자치성, 총무청이 통합되어 설립된 조직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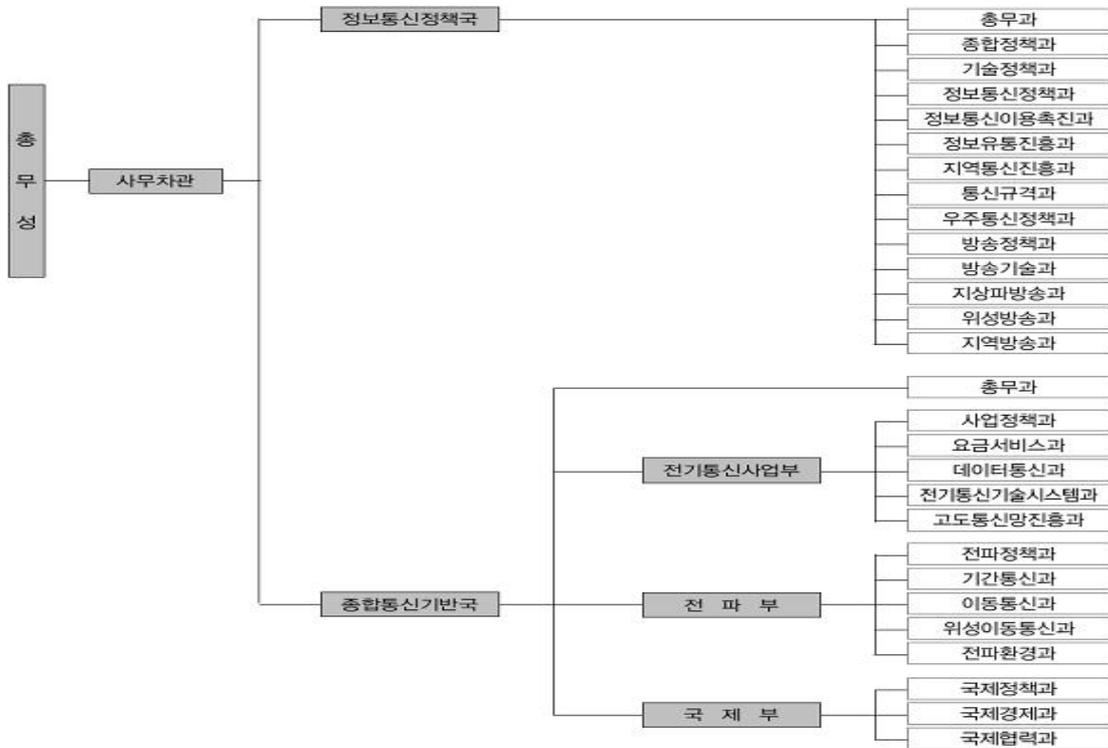
우정성 방송통신행정부서		총무성 방송통신행정부서
방송행정국 전기통신국 통신정책국	➔	정보통신정책국 총합통신기반국
기존 우정성 부속기관		현행 총무성 부속기관
전과감리심의회 전기통신심의회 전기통신기술심의회	➔	전과감리심의회 정보통신심의회

3) 우리의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행정부처
 4) 중앙부처 조직 개편은 정치지도의 행정운영확립, 행정의 슬림화/효율화, 행정의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 1부 22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축소.

2.

1)

-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진흥을 담당하는 총괄부서
- 방송통신정책/규제기구는 총무성 내국(內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 방송/통신업무는 총무성의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이 담당.
 - 정보통신정책국(첨부자료 1, 2 참조)
 - ① 전기통신의 기본적 종합적 시책을 담당.
 - ② 지상파, 위성, 케이블TV, 위성DMB, 지상파DAB등의 업무를 담당.
 - 종합통신기반국 : 주파수 할당과 전파감리 및 통신관련 사항 담당(첨부자료 1, 3 참조).
- 국(局) 차원에서는 방송통신 주무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으나 과(課)차원에서는 분리(<그림-1> 참조).
 - 정보통신국내의 정보통신정책과, 방송정책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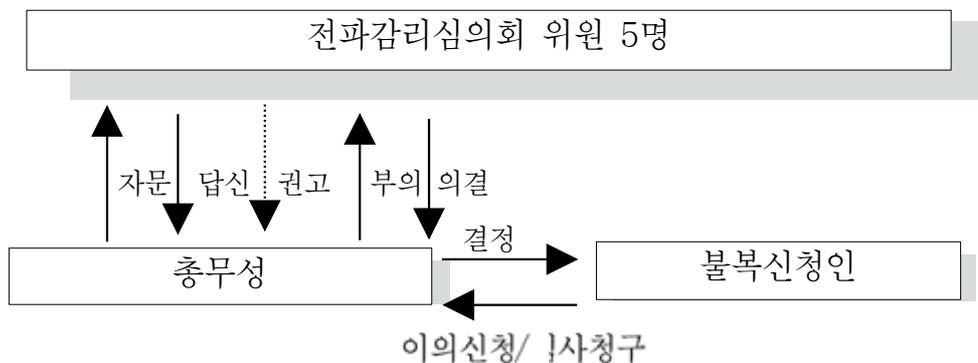


< -1>

- 예산편성은 방송과 통신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첨부자료 4 참조).
- 정보통신행정 담당 직원은 약 400여명, 이 가운데 방송관련 직원은 150여 명으로 추산.
- 총무대신의 방송통신관련 자문기관

▼ 전파감리심의회

- 설치 및 업무 근거는 전파법 제7장의 2, 방송법 제53조의 10
- 위원은 5명으로 중/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공공복지에 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자 가운데 총무대신이 임명.
- ※ 법정 결격사유로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임원(사업자 단체의 임원을 포함)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의 임기는 3년
- 전파와 방송의 규율에 관해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답신 또는 권고.
- 전파법에 입각한 총무대신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의결을 행함.
- 사무국은 총무성 총합통신기반국 총무과
- 불복신청의 심리 및 의견청취 절차를 주재하는 자로 심리관을 둘 수 있으며 심리관은 전파감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총무대신이 임명.



▼ 정보통신심의회

- 총무성조직령 제121조에 의해 설치.
- 위원은 총무대신이 임명
- 위원의 정원은 30명 이내, 학식경험을 지닌 자로 임기는 2년
- 총무대신의 자문에 응해 정보의 전자적 유통 및 전파이용에 관한 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총무대신에게 의견을 개진.
- 우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관계 각 대신에게 의견을 개진.
-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법령에 입각해 이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조사심의.
- 심의회의 구성은 정보통신기술분과회, 정보통신정책부회, 전기통신사업부회, 유선방송부회, ITU-R부회, ITU-T부회
- 서무담당부국과 : 정보통신정책국 총무과

■ 그밖에 일부 방송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독립제작사 보호 및 광고 관련 경제적 규제관련), 문화청(저작권관련), 경제산업성(콘텐츠산업정책의 일환), 지적재산전략본부(콘텐츠 진흥) 등.

2)

■ 방송통신융합형 매체 및 서비스 도입 현황⁵⁾

- 별정방송법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을 제외하고는 현행 방송법 테두리 내에서 신규 방송매체를 도입.
- BS디지털방송에서 독립형 데이터 방송 실시(2000년 12월)
- 일본MBCO가 위성 DMB 본방송을 실시(2004년 10월)
- IPTV(유선역무이용방송사업자) 본방송 실시(2003년)
- 지상파DAB 실험방송 실시(2003년 10월)
- ※ 인터넷 방송은 일반적으로 '통신'으로 분류

5) 방송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매체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 방송통신융합 현황

< -2>

융합현상	개요	사례
서비스 융합	방송과 통신 모두의 격을 갖는 중간영역적 서비스 이용이 확대	- 전자게시판(BBS), - 데이터방송 - 홈페이지에 의한 정보발신 - 인터넷 방송 등
전송로 융합	동일 전송로를 이용한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제공	- CS를 이용한 방송 -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케이블TV전화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 - 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케이블TV -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IPTV등
단말 융합	하나의 단말이 방송과 통신서비스 모두에 이용	- 인터넷뿐만 아니라 TV방송의 수신/녹화가 가능한 PC - TV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STB등
사업체 융합	방송과 통신사업의 겸업	- 2004년 12월 현재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 수 352

3)

■ 방송통신법제 현황

○ 방송과 통신이 분리된 복수법체계

- 방송관련법은 방송법, 유선텔레비전방송법, 방송대학학원법, 유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전파법 등(첨부자료 5 참조).
- 방송법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데이터방송, 위성DMB를,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은 케이블TV를 규율.
- ※ 일본의 방송관련법체계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DMB, 케이블TV 등을 포괄하는 통합법 체계인 한국과는 다름.
- 통신관련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유선전기통신법, 전파법등(첨부자료5 참조).

< -3>

방송관련	통신관련	방송/통신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 - 유선텔레비전방송법 - 유선라디오방송업무의 운용규정에 관한 법률 - 방송대학학원법 -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발달 및 보급을 위한 유선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충실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수신설비제어형방송프로그램의 제작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고도텔레비전방송시설정비촉진임시조치법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 유선전기통신법 - NTT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 - 전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원활화법 -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 신체장애자의 편리증진에 기여하는 통신/방송신체장애자 이용원활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의 카테고리는 법률 명 가운데 방송/통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률 명만을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임. 전파법은 성격상 방송 통신 각각에 병기.

**상기 외에 방송 관련 법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법, 내각부의 콘텐츠 진흥법, 문화청의 저작권 법 등이 있음.

■ 방송통신사업자 현황

- 방송사업자는 인허가 기준에 따라 일반방송사업자와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 NHK 및 방송대학학원 사업자로 분류.
- 전기통신사업자는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제1종과 제2종 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 및 신고제로 전환.

< -4> 6)

전기통신사업자*1		방송사업자*2	
제1종	422	지상계일반방송사업자	373
제2종	12,096	위성계 일반방송사업자	131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	45
		케이블TV사업자*3	548
일반 제2종	11,983	전기통신(유선)역무이용방송사업자	11
		NHK 및 방송대학학원	2
합계	11,983	합계	1,058

*1 2003년말 현재의 수(전기통신사업법 시행(2004년) 이전의 사업자 구분을 토대로 한 것임.)

*2 2004년말 현재

*3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허가시설(인입단자수 501이상의 시설)을 대상.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의 허가시설과 동등한 방송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재계산.

■ 방송통신관련 사업 규제

- 지상계 일반방송사업자, NHK 및 방송대학학원,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위성계 일반방송사업자인 수탁방송사업자는 면허, 일반방송사업자인 위탁방송사업자는 인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는 등록.
- ‘방송보급기본계획’에 입각해 방송국 및 방송채널 수 규제, 그밖에 외자규제, 요금규제 등을 실시.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등록 및 신고제로 전환.

■ 방송통신콘텐츠관련 규제

-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 규제가 없음.
- 방송은 방송법에 입각해 방송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실시.

6)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갖추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 2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특별 제2종은 대규모이고 일반 제 2종은 소규모.

-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훼손하지 않을 것,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할 것,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명확하게 할 것(방송법 제3조의 2).
- 방송사업자는 자주적으로 프로그램 심의기관(사후심의) 설치 및 운영 의무(방송법 제3조의 4).
- 방송사 자율의 심의체제 외에도 제 3자로 구성된 ‘방송윤리기구(BPO)’가 사후심의를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압력 행사.
 - BPO는 방송사 자율의 심의체제가 형식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태생.
- 통신콘텐츠의 내용규제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자율 규제가 기본이며 일부 콘텐츠에 대해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는 수준.

■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한 제도적 정비

- 일본은 현행 방송 통신 법제 분리 기초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방송 통신 융합현상에 대응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사업자 융합은 케이블TV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1985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으로 케이블TV사업자가 자체 케이블TV망을 이용해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 수는 2004년 12월 현재 352사.
- 198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CS방송에서 하드 소프트웨어 분리제도 실현.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
 - 통신위성(CS)을 이용한 방송을 실시하기 위한 수탁방송사업자(하드웨어)와 위탁방송사업자(소프트웨어) 분리 제도를 도입.
 - ※ BS디지털방송(2000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2002년)도 동 제도를 도입.
- 1996년에 방송통신 중간영역적인 서비스 개념을 정립해 서비스 융합에 대응.
 - 우정성은 이미 1989년에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

를 운영.

- 우정성의 '21세기를 향한 통신 방송의 융합에 관한 간담회' 최종보고서에서 '공연성을 지는 통신'과 '한정성을 지닌 방송' 개념을 제시.

<방송통신 중간영역적인 서비스 개념의 정립>

- '공연성'(公然性)을 지닌 통신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게시판 등은 통신의 기본적 특성을 지니면서 통신 내용의 비밀이 없음.
- '한정성'(限定性)을 지닌 방송
 - 고도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등 방송으로서의 기본적 특성을 지니면서 한정된 시청자에 대해 정보를 발신.

- 방송통신 중간영역적인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분.

※ 1997년에 1차 가이드라인, 2001년 12월에 1차 가이드라인을 경신해 2차 가이드라인 제정

<통신으로부터 방송을 구분하는 기준>

- 공중(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수신케 하려는 것을 송신자가 의도하고 있음이 송신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지 아닌지로 판단.

- ① 그 외에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유대 정도. 수신자의 속성 강도
- ② 통신사항이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대관계 및 수신자의 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 ③ 정보전달방식의 비밀성
- ④ 수신기의 관리
- ⑤ 광고의 유무.

이 가운데 ③~⑤는 송신자의 의도를 추정할 때의 간접적인 판단기준이며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①②.

예) 유료 위성방송의 경우, 요금을 지불하면 다시 말해 수신자가 임의로 수신 의사표시를 하면 방송사업자측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수신자의 특정성은 없어 '방송'으로 간주.

- 방송통신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한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2001년에 제정. 시행은 2002년부터.
- 전송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IPTV등 방송통신융합을 법제화한 최초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2004년 말 현재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 수⁷⁾는 5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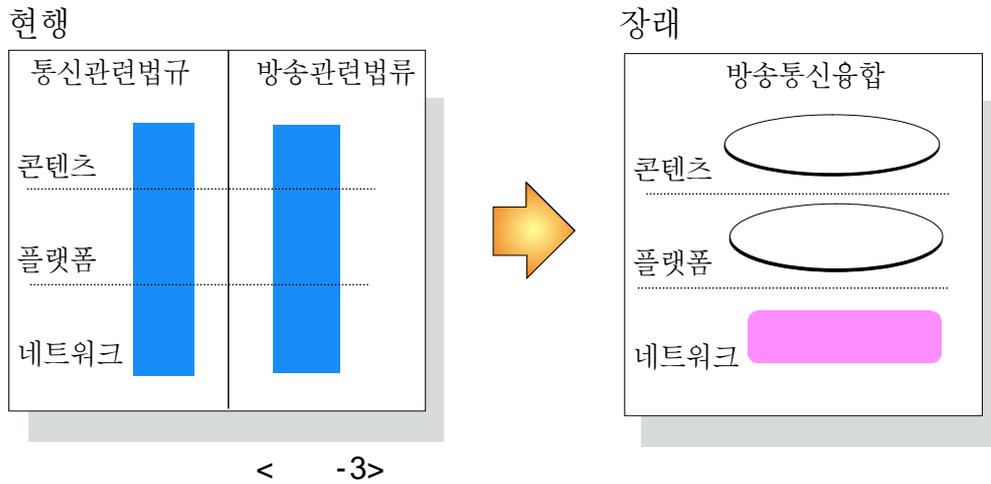
1)

- 2001년 12월 IT관련규제개혁전문조사회가 ‘IT분야의 규제개혁의 방향성’이란 보고서에서 ‘방송 통신제도를 현행의 수직적인 사업별 규제체계에서 수평적인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해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융합을 가속해야한다’고 주장.
- 방송과 통신은 상이한 법체계에서 규제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IP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필연적임.
- 아날로그 기술을 전제로 한 현행 수직적 방송통신규제체계가 디지털 기술, IP화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변혁을 저해할 우려.
- 이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를 디지털 기술, IP화를 전제로 한 수평의 경쟁촉진체제로 개혁해야 함.

2)

- 아날로그 기술을 토대로 한 현행 수직적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디지털 기술, IP화의 방향에 맞게 수평적 경쟁촉진체제로 개혁하고 사업의 수평분리와 레이어 내에서의 경쟁,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해야 함.

7)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는 ‘히카리 플러스 TV’, ‘BBTV’ 등과 같은 IPTV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음.



3)

- 방송과 신문업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해 이른바 ‘수평분리’ 논쟁은 진화된 상태임.

<기능별 수평분리 주장에 대한 일본 관련업계의 반박논리>

- 자유롭고 일관된 의사와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이 침해되어 방송의 공공적 사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국민생활 및 문화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방송서비스가 한꺼번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
- 수평분리 하에서는 방송의 언론기능이 위축되거나 편중될 우려가 존재. 보도의 송신여부를 방송국이 아니라 통신사가 결정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게 되거나 편중될 우려가 있다.
- 미시적으로는 방송콘텐츠가 인터넷상에서 전송되면 콘텐츠의 시청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료의 요금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콘텐츠 유통에 협조하기 어렵다.
- 현재 아날로그 방송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일치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만약 양자가 분리(수평분리)된다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2.

1)

- 2000년 12월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간담회’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타이틀의 중간보고서에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 단계적 제도정비를 축으로 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융합의 진전에 대응하는 제도정비

▶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제도정비

- 전송로 융합이 진전된 CS디지털방송, 유선텔레비전방송 등에 대해 소프트/하드분리를 한층 추진하는 제도를 정비.

- ※ 설비제공을 통신사업으로 규정하고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방송으로 제도화⁸⁾

CS디지털방송 : 위성방송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송 또는 통신에 설비를 제공.

유선텔레비전방송 : 통신사업자가 FTTH 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상의 콘텐츠 전송비즈니스의 취급

- 현행 방송에 대한 규율의 적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한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전개.

콘텐츠 제공자 등에 의한 자율적인 룰 마련 등의 지원,
효과적인 필터링 시스템의 구축

▶ 방송의 다양화에 대응한 규제개혁

- 방송관련 각종 규율의 적용에 대해 융합의 진전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구분에 대해 절차면의 정비 필요성을 포함해 검토.

◎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 초고속 인터넷망의 정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경쟁정책, 연구개발, 지원조치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개 지원

- 최첨단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전기통신시스템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 조성.

첨단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기능을 실증하는 장으로서의 테스트 베드 구축.

- e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인증제도 등의 사업환경 정비
- 시큐리티 기술의 개발.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기반기술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의 추진.

◎ 정보유통 룰의 확립

- ▶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대책
- ▶ 개인정보의 보호

◎콘텐츠제공 등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환경 정비

- ▶ 콘텐츠 제공자 등에게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등
- 통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 등에 요구되는 규격 등의 정보공개와 공통 대책의 검토
-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한 고객정보의 이용, 공개 룰의 마련.
- ▶ 콘텐츠 유통시장의 형성촉진
- 콘텐츠에 부여되는 코드체계의 공통화 추진
- 저작권 등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간편하고 신속한 저작권 보호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콘텐츠 관리기술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
- 기술의 고도화와 간편한 이용 차원에서 개방적인 시스템을 추구.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크리에이터, IT인재의 육성,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공용도의 인터넷 이용 및 매력적인 콘텐츠 형성의 촉진.

8) 2001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의 제정으로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

2)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2001년 12월 ‘통신과 방송융합분야의 경쟁정책상의 과제’에서 단계적 제도정비를 축으로 경쟁정책 차원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 통신과 방송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규제 제도 정비

○ 융합의 진전에 대응한 제도의 재구축

-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경쟁의 기본 룰인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규제해 나가는 등의 대응이 기본.
- 예시된 서비스⁹⁾이외는 모두 통신으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변경해 방송 범위를 한정.
- 앞으로 통신과 방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로와 콘텐츠의 제작, 전송으로 나누고, 희소성, 불가결성을 지닌 설비 등에 대해서만 접속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시행하는 제도의 재구축을 검토

○ 현행규제의 완화

- 진입규제 : 전과할당에 관한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현행의 운용을 개선하고 입찰제도 등을 검토.
-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원칙등 : 대상이 되는 방송매체의 한정
- 요금규제 : 가격경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콘텐츠 규제 : 통신과 방송의 중간영역적인 신규 서비스 등을 대상에서 제외.
- 통신분야의 규제 : 사업자 구분의 재검토, 신규진입자 등의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 유통축진을 위한 경쟁환경 정비

○ 콘텐츠 유통축진을 위한 저작권 처리 룰의 확립

○ 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활용

- 방송콘텐츠를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 콘텐츠 거래 시의 공정한 룰 확립
-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배제
- 기존사업자간의 경쟁,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사업자간 상호진입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 의한 신규진입을 촉진.
- 전송로, 콘텐츠 전송 및 콘텐츠 제작의 각 계층에서의 경쟁촉진
- 계층간 수직적 통합 제휴 등에 의한 시장폐쇄효과의 배제

1.

- 일본은 50여년이 넘게 단일 방송통신 행정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제가 달라 실제의 정책이나 규제는 방송과 통신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단일행정기관의 설치와는 달리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법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방송통신융합현상의 진전정도에 따라 이의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방송통신 중간 영역적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1997년, 2001년), 전송로 융합을 제도화한 별정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2001년)을 정비.
- 법제는 다르지만, 국(局)차원에서 방송 통신정책과 규제가 단일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방송통신융합현상과 이의 제도화에 대해 종합적이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
 - 일본은 IT인프라 등이 한국보다 뒤쳐졌음에도 오랫동안 정부부처의 방송통신 단일조직을 유지해온 관계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음. IPTV, 위성DMB, 지상파DAB 등과 같은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매체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할 수 있었음.
- 선 규제기관 단일화, 후 단계적 제도 정비라는 일본형 모델은 우리의 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후 법제정비 ‘수순’과도 유사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방송통신 행정조직이

9) 총무성의 방송통신의 중간영역적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칭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한국과 총무성 내국(內局)¹⁰⁾으로 단일화된 일본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 일본은 중앙행정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에 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우정성을 해체하고 신설된 총무성의 내국으로 방송통신행정을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이전의 방송통신행정 3국도 현재 2국으로 축소된 상황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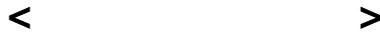
- 일본정부는 독립행정위원회조직이 의원내각제의 독임제 시스템 하에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총무대신의 독단을 일정부분 견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기관(전과감리심의회, 정보통신심의회)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1952년 전과감리위원회 폐지 이후 정부부처형 방송통신 조직이 일관된 기조임.
- 1990년대 후반 일부에서 총무성의 외국(外局)에 통신방송위원회를 두는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방송행정의 공정중립과 행정의 일관성의 제도적 보장 차원에서 정부부처형태를 유지.
- 방송 통신 분야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적인 대책, 제도개선, 세계 표준을 목표로 한 연구 개발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단일조직으로 방송통신을 관할하고 있음.
- 방송통신융합의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합의제 형태인 위원회 조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정부의 관계 부처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10) 일본의 방송통신행정조직은 2001년 1월에 우정성자체가 해체되었을 뿐 아니라 이전의 3국에서 신설된 총무성내 2국으로 사실상 부서도 축소됨.

- 일본은 독립행정위원회가 아닌 정부부처주도형의 방송조직임. 따라서 국가 전략산업이자 성장유망산업인 방송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쉽 발휘가 가능.
- 2001년부터의 e-Japan 정책을 통해 세계 최첨단 IT국가에 올라섰으며 201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고속 또는 초고속을 이용 가능한 ICT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력있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행정위원회 형태보다 정책과 규제, 진흥을 아우르는 일본의 정부부처형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3.

-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지만 일본정부는 2004년 6월 콘텐츠 진흥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조직인 ‘지적재산전략본부’와 총무성등 관련부처 등이 중심이 되어 콘텐츠 진흥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첨부자료 6 참조).
- 방송행정 주무부서인 총무성은 방송콘텐츠, 경제산업성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진흥에 주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콘텐츠 진흥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대만의 콘텐츠 진흥정책 등에 자극받아 정책드라이브를 걸려는 시도임.
-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방송을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간 콘텐츠 산업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片岡俊夫(2001), “新放送概論”, 220~231쪽.
- 古川元(1998), “ケーブルテレビおもしろ読本”, 58~78쪽.
- 政府規制等と競争政策に関する研究会 (2001), “通信と放送の融合分野における競争政策上の課題”, 公正取引委員会
- 21世紀に向けた通信・放送の融合に関する懇談会 (1996), “融合メディアの新時代”, 総務省
- 通信・放送融合時代の情報通信政策のあり方に関する懇談会 (2000), “通信・放送融合サービスの健全な発展に向けて”, 総務省
- ユビキタスネット社会の実現にむけた政策懇談会 (2004), “u-Japan政策”, 総務省
- 総務省 (2004), “平成16年版 情報通信白書”
- 総務省 (2005), “平成17年版 情報通信白書”
- 総務省, “通信・放送の中間領域的な新たなサービスに係わる通信と放送の区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01年12月26日
- IT関連規制改革専門調査会 (2001), “IT分野の規制改革の方向性”, IT戦略本部
- 日本民間放送連盟, 2001年12月20日付IT関連規制改革専門調査会報告に対する報道発表
- 日本民間放送連盟, 2002年1月18日付IT関連規制改革専門調査会報告に対する報道発表
- 日本新聞協会, 2002年1月30日付けIT関連規制改革専門調査会報告に対する意見書
- 김대호 (2004),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방향”, 방송통신융합시대 제도정비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방송위원회
- 김동욱 (2004), “미디어 융합을 위한 정부조직의 설계 대안”, 방송통신 통합 기구의 바람직한 방향과 쟁점, 한국미디어경영학회
-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2004년 여름호

- 방송위원회,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2005년 5월
- 신호철 (2004) “일본의 통신 / 방송융합에 따른 대응동향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10호 통권 348호
- 유의선 (2004),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규제관리기구 정립방안”, 방송통신융합시대 제도정비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방송위원회
- 최양수 (2005), “방송통신융합의 정책이념”, 방송통신융합의 정책이념과 실제, 한국뉴미디어 방송협회

<첨부자료 1>

/

국명	소관업무
정보통신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관련 종합정책의 기획/입안,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 콘텐츠 유통촉진, 정보 시큐리티 대책 추진,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선, 지역 정보화의 추진, 정보통신정책분야의 표준화정책, 우주통신의 개발/이용촉진 - 방송의 종합적인 정책 기획/입안, 디지털 방송의 추진, 방송기술의 연구 개발, 방송국 면허등, TV/라디오 난시청 해소,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등록, 위탁방송업무의 인정 등, 국제방송 실시 관련, 케이블TV시설 설치 허가등 - 통신종합연구소, 통신 방송기구,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방송대학학원의 조직, 운영 등, 종합통신국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소의 조직/운영등, 정보통신심의회의 사무, 일본 방송협회(NHK) 관련
총합통신기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무선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규율, 전기통신의 발달, 개선 및 조정, 비상사태시 중요통신의 확보, 주파수 할당 및 전파의 감독관리, 전파의 감시 및 전파의 질 개선 및 불법 개설 무선국 및 불법 설치 고주파이용설비의 조사, 전파가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피해방지 또는 경감, 전파의 이용촉진, 조약 또는 법률(법률에 입각한 명령 포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전자적 유통 및 전파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칙을 협의하고 체결하는 일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기타 기관과의 연락업무, 정보통신정책국 및 총합통신기반국 관련 국제관계 사무의 총괄, 정보통신정책국 및 총합통신기반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전파감리심의회 관련 업무

<첨부자료 2>

과의 명칭	주요 업무
총무과	-정보통신 정책국내 소관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 -인사, 훈련, 법령, 기구, 정원, 예산등. -정보통신심의회의 사무. -종합통신국등등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소의 조직/운영등.
종합정책과	-정보통신 관련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텔레콤 관련 예산/세제 관련 업무. -정보통신백서/통계.
기술정책과	-정보통신 관련 종합적인 기술정책의 기획/입안. -각종 연구개발 프로젝트. -통신종합연구소의 조직/운영등.
정보통신정책과	-콘텐츠의 유통촉진. -뉴 비즈니스의 진흥. -정보시큐리티 대책의 추진. -‘통신·방송기구’의 조직/운영등.
정보통신 이용촉진과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선. -정보통신분야의 인재육성.
정보유통진흥과	-정보통신분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SOHO/텔레워크의 보급촉진.
지역통신진흥과	-지역정보화의 추진. -지역공공네트워크 정비의 추진. -오키나와 국제정보특구의 추진.
통신규격과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정책. -표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시큐리티 기술규격.
우주통신정책과	-우주통신의 개발/이용촉진. -위성애플리케이션의 연구개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조직/운영등.
방송정책과	-방송관련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디지털 방송의 추진 -NHK에 관한 업무 -방송대학학원의 조직 /운영등
방송기술과	-방송관련 종합적인 기술정책의 기획, 입안. -방송기술의 연구/개발. -라디오의 난시청해소.
지상방송과	-지상방송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방송국 면허등. -TV의 난시청해소.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대책.
위성방송과	-위성방송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방송위성국의 면허등. -위탁방송업무의 인정등.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등록. -국제방송 실시 업무
지역방송과	-지역방송(커뮤니티 방송, 유선방송)의 제도 기획/입안. -케이블TV시설의 설치허가등.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등록.

<첨부자료 3>

과의 명칭	주요 업무
총무과	-종합통신기반국 소관업무의 종합조정. -종합통신기반국의 소관업무 관련 통계 -전파감리심의회의 사무등.
전기통신사업부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무선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규율. -전기통신사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 -비상사태시의 중요통신의 확보.
사업정책과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시설 설치 및 사용의 규율. -전기통신사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관련 종합 정책의 기획/입안 및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NTT, 동NTT 및 서NTT의 조직 및 운영일반등.
요금서비스과	-요금 기타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제공조건 관련 업무. -전기통신사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
데이터 통신과	-데이터 통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시설 설치 및 사용의 규율 -전기통신사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
전기통신기술시스템과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선시설의 설치 및 사용 규율에 관한 기술적 사항 -전기통신사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전기통신업의 기술에 관련된 사항 -비상사태시의 중요통신의 확보
고도통신망진흥과	-전기통신사업용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가입자계 광섬유망의 정비촉진
소비자 행정과	-전기통신사업부의 소관업무 관련 일반소비자의 이익보호
전파부	-정보의 전자적 유통을 위한 유무선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규율. -비상사태시의 중요통신의 확보. -주파수 할당 및 전파의 감독관리.전파의 이용촉진 -전파의 감시 및 전파의 질적 개선 및 불법 개설 무선국 및 불법 설치 고주파이용설비의 조사. -전파가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 -조약 또는 법률(법률에 입각한 명령을 포함)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전자적 유통 및 전파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칙을 협의하고 체결하는 일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의 기관과의 연락업무
전파정책과	-주파수의 할당, 전파 이용료 -전파의 감독관리 관련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및 추진 -전파의 송출방법에 대한 예보 및 경보. -전파법 제103조의 2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종합무선국관리 파일의 작성 및 관리. -전파의 감독관리, 전파의 이용촉진 -분배된 주파수의 사용 및 혼신 관련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외국의 주무관청 등과의 연락등.
기간통신과	-육상 무선국 가운데 이동 중에 운용되지 않은 것 및 인공위성 무선국 관련 무선국 면허 관련사무 및 전파의 이용촉진. -비상사태 시의 중요통신의 확보. -전파법 제 102조의 17 제1항에 규정된 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의 조직 및 운영일반
이동통신과	-육상, 인공위성 또는 로켓에 개설된 무선국 관련 무선국면허관련사무 및 전파의 이용촉진.
위성이동통신과	-다음에 열거하는 무선국 관련 무선국면허관련사무 및 전파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자동차, 선박 기타 이용하는 것에 개설되었거나 휴대해 사용하기 위해 개설된 무선국 및 이들 무선국 또는 휴대해 사용하기 위한 수신 설비와 통신을 행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된 이동하지 않는 무선국 가운데 전호에 열거된 무선국의 중에 의해 통신을 행하는 것. -항공기 또는 선박에 개설하거나 항공기 또는 선박과의 사이에 통신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육상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환경과	-전파가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 -무선국의 전파 발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무선국에 전파의 발사를 명령하고 발사하는 전파의 질 또는 공중선 전력에 대해 행하는 검사. -무선설비기기의 시험 및 교정(校正), 무선설비 관련 기준/인증제도 -전파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무선설비 등의 점검 사업을 행하는 자의 등록 -고주파이용설비 관련 전파의 감독관리 -전파의 감시 및 전파의 질적 개선 및 불법 개설된 무선국 및 불법 설치 고주파 이용설비의 조사 -고주파이용설비 관련 전파이용의 촉진. 일반소비자의 이익보호 -국제전파감시기관과의 연락.
국제부	-정보통신정책국 및 종합 통신기반국의 소관
국제정책과	-국제부 소관업무 관련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입안 및 추진, 국제관련사무의 총괄 -조약 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보의 전자적 유통 및 전파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규칙을 협의하고 체결하는 일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기타 기관과 연락하는 일등.
국제경제과	-국제관련사무 가운데 경제관련 사무의 총괄
국제협력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의 총괄

<첨부자료 4>

(2005)

항목		내용	2005년도 예산(전년도)
전자정부/전자 자치단체의 추 진	전자정부의 추진	-국민의 편리성/서비스 향상 -IT화에 대비한 업무개혁의 추진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충실 -OS의 시큐리티 품질평가수법의 확립	59.2억 엔(42.5)
	전자자치단체의 추진	-전자자치체 구상의 촉진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시큐리티 대책의 추진 -주민기본대장 카드의 이활용의 추진 -차세대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 전개를 위한 연구/개발 -지방선거시 전자적 기록식 투표의 평가분석	13.2억 엔(15.2)
U-JAPAN의 실 현	선진적인 유비쿼 터스 네트워크 환 경의 정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촉진 -ICT의 이용환경정비의 촉진 -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255.7억엔)	412.9억 엔(365.8)
	전과개방전략의 추진	-전과이용료를 채원으로 무선산업발전의 기반 연구개발 및 휴대전화 등의 이용가능지역 확대등	173.4억 엔(신규)
	국제전략의 추진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의 구축 추진 -세계정보사회서미트 제2라운드를 향한 국제회의의 개최	13.8억 엔(12.6)
	시큐리티정책의 추진	-시큐리티 기술기반의 형성 -OS의 시큐리티품질평가수법의 확립	41.0억 엔(37.9)
	콘텐츠제작/유통 지원기술의 개발	-콘텐츠제작/유통지원기술의 개발 -Web정보의 아카이브화 -콘텐츠 안심 마크제도의 신설	12.4억 엔(2.9)
	고도ICT인재육성	-고도정보통신 인재양성프로그램의 조사/개발 -유비쿼터스 러닝기반의 개발/실증 -정보통신인재양성 및 시큐리티 인재육성센터 개설지원제도	7.9억 엔(6.8)
	디지털 디바이드 의 개선	-지리적 디바이드의 개선 -정보 배리어 프리 환경의 정비	103.1억 엔(119.3)
	전략적 연구개발 의 추진	-전략적 정보통신개발추진제도(경쟁적 연구자금) -포토닉스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 -양자/나노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전자과 시큐리티 확보를 위한 전자과 측정기술의 연구개발 -우주통신기술 등의 연구개발	81.8억 엔(77.7)
국민의 안심안 전의 확보	-전자정부/전자자치체 구축을 위한 시큐리티의 확보 -시큐리티 기술기반의 형성 -정보통신시큐리티 인재육성센터 개설지원사업	47.0억 엔(40.6)	

(soumu.go.jp)

<첨부자료 5>

(1) 방송법

-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송제도의 골격 및 방송프로그램 편집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NHK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규정.
- ※ 방송의 정의 :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의 1).

(2) 전파법

- 전파의 공평/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 전파법은 무선국 면허, 무선설비 조건, 무선국 감독등 통신·방송관련 하드웨어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

(3) 유선텔레비전방송법

- 이 법률은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시설 설치 및 업무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유선텔레비전방송 수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선텔레비전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해 이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프로그램 편집에 관해서는 방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
- ※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 따르면, 유선텔레비전방송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으로 정의

(4)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이 법률은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업무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수신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이로써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고도텔레비전방송시설정비촉진임시조치법

- 고도텔레비전방송시설정비촉진임시조치법은 고도텔레비전방송시설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을 조기에 보급하고 이로써 고도정보 통신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6)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은 사회경제의 정보화로 인해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정통신·방송 개발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통신·방송사업분야의 개척을 통해 정보 유통을 촉진하고 이로써 일본의 정보화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7)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은 고도통신시설, 신뢰성 향상 시설 및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 정비 및 특정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 기반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 유선텔레비전 방송 발달 및 보급을 위한 유선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충실 사업 추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 이 법은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선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발달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로써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9) 전기통신사업법

- 이 법률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에 입각해 이의 운영을 적정하고 합리적

으로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로써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의 편리 확보를 도모해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유선전기통신법

- 이 법률은 유선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용을 규율하고 유선전기통신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특정통신/방송개발사업실시원활화법

- 이 법률은 사회경제의 정보화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정보유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정 통신/방송개발사업의 실시 원활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통신/방송사업분야의 개척 등을 통해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촉진을 도모하고 이로써 정보화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에 통신방송융합기술의 개발을 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통신방송융합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을 도모하고 이로써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자료 6>

1) 일본정부의 콘텐츠 진흥정책

■ 일본정부의 콘텐츠 진흥제도

- 콘텐츠 진흥법의 제정(2004.6 시행)
 -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
- 콘텐츠 수탁 가능한 신탁제도(신탁업법 개정)
- 음악 레코드의 환류방지조치(저작권법 개정)등

■ 콘텐츠 진흥정책

- 콘텐츠 업계의 근대화/합리화의 지원,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콘텐츠 제작에의 인센티브 부여, 인재육성의 강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지원, 보급, 인재발굴과 포상, 교육/계발의 충실, 해외 신분야 비즈니스 등의 적극 전개, 해적판 대책의 강화등

2) 일본 콘텐츠 진흥법의 내용

- 콘텐츠 진흥법의 대상 :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영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양 또는 오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영화, 음악, 연극,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이 포함.
- 추진체계: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콘텐츠 관련행정기관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책실시를 위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한다.
- 기본시책 : 인재육성,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원활한 유통의 촉진등.
- 진흥시책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확립,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 해외 사업전개의 촉진등